

# 강원특별자치도

## 경징계·경고·시정

제 목 휴가, 연가가산 등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① ○○소방서 ○○○○○○ 소방○ ○○○  
② ○○소방서○○○○○○○○○○前○○소방서○○○○○○○○○○ 소방○ ○○○  
③ ○○소방서 ○○○○○○ 소방○ ○○○  
④ ○○소방서 ○○○○○○ 소방○ ○○○

내 용

### 1. 개요

○○소방서(○○○○○○)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연가·병가·공가 등의 복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2. 지적사항

#### 가. 공가대상이 아님에도 공가 사용

#####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8조의2에 의하면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sup>1)</sup>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 2020.08.13.)」 ‘제8장 휴가’, ‘다. 공가’, ‘(2)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나)’ 에 따르면 전보시 업무인계인수·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를 포함하되, 부임일 다음날까지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방청 소방정책과-2237(2019. 4. 4., 소방직무관련 자격인증 시험 응시관련 복무처리 방안 알림)호에 따르면 인명구조사, 응급구조사 등 소방청에서 정책적으로 자격·인증 취득을 추진하는 시험, 소방학교에서 시험을 주관 실시하거나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시험, 현장 소방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인증시험의 경우는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출장으로 처리하고, 소방업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자기개발의 성격이 강한 자격 시험의 경우 연가로 처리하도록 공문을 시행하였다.

- 1)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공가)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또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날에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 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또는 정밀건강진단
    - 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에 따른 건강검진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제5호 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30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7조에 따른 대의위원회에 참석할 때
  12. 「검역법」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강원도 소방공무원 근무지침(2018.7.01.)」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24시간 전일 또는 3교대 야간근무자가 다음날 교육, 출장 등 공무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근 부서의 장은 출동력에 지장이 없을 경우 해당 근무자를 주간근무 또는 비번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공가를 사용할 경우, 공가 사용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승인받아 사용하여야 하고, 공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출장의 경우 출장 전일(前日)이 24시간 전일(全日) 근무인 경우 주간근무 또는 비번으로 편성하거나, 주간근무 또는 비번으로 편성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시간만큼 조퇴(연가) 등을 사용하여야 했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대상 기간(2020. 6.~현재) 동안 ○○소방서 휴가등 복무관리현황을 확인한바 총 4명이 교육입교 등의 사유로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다.

### 나. 복무관리시스템(e사람) 근무상황신청 시 휴가구분 적용 부적정

####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 후 인사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복무관리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e사람 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가를 신청할 경우 근무상황 중별<sup>2)</sup>을 정확

2) 근무상황 중별

| 중별 |    | 세부선택 | 연가일수 공제여부 |
|----|----|------|-----------|
| 연가 | 연가 |      | 공제        |

하게 입력하여 연간 연가일수에서 공제되도록 하여야 했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대상 기간(2020. 6.~현재) 동안 ○○소방서 휴가 등 근무상황 내역을 확인한바 소방○ ○○○은 ○○소방서 근무당시 ‘00. 0. 00. 주간연가를 사유로 휴가를 신청하였는데, 이 경우 e사람 시스템 휴가종별 입력 시 ‘연가’, ‘지각(연가처리)’ 로 입력하여 연간 연가일수에서 공제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기타’ 로 신청하여 연가일수 공제 없이 연가 1일을 초과 사용한 사실이 있다.

### 다. 특별휴가 대상이 아님에도 특별휴가 사용

####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0조에 따른 경조사 특별휴가와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강원도 조례)」 제23조에 따른 경조사별 휴가일수의 차이는 다음 <표3>과 같다.

<표3>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 비교표

| 구분                   |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
| 반일연가                 | 오전, 오후                  | 공제         |
|                      | 연가처리                    | 공제         |
| 지각, 외출, 조퇴           | 일반병가(진단서 첨부 유·무), 공무상병가 | 미공제        |
|                      | 진단서미첨부                  | 6일초과시 공제   |
| 병가                   | 진단서첨부, 병가(30일 이상)       | 미공제        |
|                      | 공무상병가                   | 미공제        |
| 공가, 특별휴가, 대체휴무, 당직휴무 |                         | 미공제        |
| 결근                   |                         | 공제         |
| 기타                   | 관외여행                    | 미공제        |
|                      | 기타                      | 미공제        |

※ 자료: e사람 시스템 발췌

|    | 대상                 | 일수 | 대상                 | 일수 |
|----|--------------------|----|--------------------|----|
| 결혼 | 본인                 | 5  | 본인                 | 5  |
|    |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자녀                 | 1  |
| 회갑 | 본인 및 배우자           | 1  |                    |    |
| 출산 | 배우자                | 10 | 배우자                | 10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    | 자녀, 자녀의 배우자        | 3  | 자녀, 자녀의 배우자        | 3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 1  |                    |    |
| 탈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1  |                    |    |
| 입양 | 본인                 | 20 |                    |    |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소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1조에 따르면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이 영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2020. 4. 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후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소방청에서는 2021. 8. 18.경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경조사 특별휴가 적용 기준을 시달하여(소방청 소방정책과-6848(2021.8.18., 법제처 법령해석 경조사 휴가 적용 기준 알림), 시·도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조사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21. 7. 15. 이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2022. 2. 18.경 경조사 이외의 특별휴가 적용기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특별휴가 종류를 시·도 조례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특별휴가의 종류를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시·도 조례를 적용한다고 기준을 제시달 하였고(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1130(2022.2.18., 소방공무원 특별휴가 적용 기준 알림), 기존 복무처리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뢰보호 원칙 등 고려 소급 적용을 자제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2022. 2. 18. 이후 특별휴가를 사용 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시·도 조례를 비교하여 시·도 조례에만 있는 장기재직휴가 등 특별휴가 종류는 시·도 조례를 따르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시·도 조례에 공통으로 적용된 경조사 등 특별휴가 종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하여 특별휴가를 신청하여야 했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대상 기간(2020. 6.-현재) 동안 ○○소방서 휴가 등 복무관리 현황을 확인한 바 도 조례 경조사 규정에는 있으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경조사 휴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사망 등” 경조사의 사유로 특별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 라. 임신검진 특별휴가 사용에 관한 사항

###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2020.10.20.)」 제20조 제16항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 2021.06.30.)」 ‘제8장 휴가’, ‘라. 특별휴가’, ‘(11) 임신검진휴가’, ‘(가)’ 와 ‘(나)’ 에 따르면 임신검진휴가 최초 신청시 신청자는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임신검진휴가가 임신검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적합하게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했어야 했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대상 기간(2020. 6.~현재) 동안 ○○소방서 휴가 등 복무관리 현황 및 임신검진 사실자료(진료사실증명원 등)를 요구하여 확인한 바 총 3명이 임신검진 사실이 없음에도 소방○ ○○○은 총 9회 중 2회, 소방○ ○○○은 총 3회 중 1회, 소방○ ○○○은 총 10회 중 6회를 임신검진휴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

### 마. 연가가산 부적정

####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연도 중 결근·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정직·강등·직위해제된 사실 및 인사혁신처장에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sup>3)</sup>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 ‘제8장 휴가’, ‘4. 휴가 종류별 실시방법’, ‘가. 연가’, ‘(2) 연가 일수의 가산’에서는 연도 중 결근·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sup>4)</sup>이 없는

3) 1. 병가(제18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4)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공로퇴직연수기간, 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 기간,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 교육훈련 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직제나 정원의 개편 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공무원은 다음 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한계 2일)을 가산하며, 가산사실을 개인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첫째란에 기재하고 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연가가산은 1년간 성실히 근무한 데 대한 보상이므로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1월 1일자 신규임용자는 해당, 1월 2일 이후 임용자는 제외)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연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직위해제·공로연수·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대기발령·연도 중 임용된 신규자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 일수를 산정할 때 연가를 가산하여서는 안 된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소방서 종합감사대상기간(2020. 6.~현재) 연가 가산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1명이 법정연가일수에 연가미사용 또는 병가미사용을 사유로 연가를 가산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

###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 가. 관련자 의견

의견 없음

#### 나. 관련자 의견에 대한 판단

판단이 필요하지 않음

### 4.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 ○○○은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는 ○○소방서 ○○○○○

○○○○에서, 0000. 0. 00.부터 현재까지(現 ○○○○ 중) ○○소방서 ○○○○  
○에서 근무하면서 임신기간(0000. 0. 0.-0000. 0. 00.) 동안 임신검진을 목적으로  
총 10회의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하였고, ○○소방서 감사기간 중 임신검진 증빙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0000. 00. 00.(금), 0000. 0. 00.(금), 0000. 0. 0.(수), 0000. 0.  
00.(금), 0000. 0. 00.(금), 0000. 0. 00.(월) 총 6회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추가 조사(2023. 10. 31. 문답)를 실시 한 결과 소방○ ○○○가  
사용한 임신검진휴가 중 임신검진을 미실시 한 총 6회에 대하여 남편 동행을  
위해 다음날로 예약변경, 귀가 후 휴식 등의 사유로 임신검진 사실이 없거나,  
백일해 예방접종을 위해 사용 등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방○ ○○○는 임신 기간중에 임신검진휴가 10일을 임신검진  
과 상관없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소방○ ○○○  
의 임신검진휴가 신청사유를 보면 ‘임신검진’ 내지는 ‘병원진료’ 를 휴가사유로  
적시한 것으로 보아 본인이 임신검진휴가의 사용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0000. 00. 00.(금) 16주 정기검진을 사유로 임신검진휴가를 신청한 후 남편과 동행  
을 하기 위해 임신검진을 다음 날인 0000. 00. 00.(토)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  
○가 제출한 0000. 00. 00. 진료내역서를 보면 0000. 00. 00. 진료예약이 되어 있는 것  
으로 볼 때 0000. 00. 00. 임신검진을 위해 병원에 방문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  
된다.

한편 임신사실이 확인되면,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 최대 45일의 출산휴가와  
임신검진휴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고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임산부는 정기 건강진단<sup>5)</sup>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으나

통상 10회 정도의 임신검진을 받게 되는데, ○○○가 ○○ 소재 임신검진병원에  
방문한 기록을 살펴보면, 총 10회 방문하였는데 이 중 0000. 0. 00. 당직휴무를  
사용하여 진료를 받았고 0000. 0. 00. 병가를 사용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0000.  
00. 00.과 0000. 0. 00. 토요일에 진료를 받았고 0000. 0. 00. 유연근무와 모성보  
호시간을 적용하여 15시경 퇴근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0000. 0. 00. 연가를 사용  
해서 진료를 받는 등 검진기록으로 볼 때 ○○○는 임신검진휴가 신청이 이루어  
진 총 10일 중 실제 검진기록과 일치하는 4일을 제외한 6일의 검진일자가 토요  
일이나 법정 휴가 등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고, 이로 보아 ○○○는 임신검진  
휴가를 신청사유와 달리 사적으로 사용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방○ ○○○는 임신검진휴가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허위  
로 임신검진휴가를 신청한 후 귀가 또는 휴식하는 등 임신검진휴가를 부당하게 사용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징계”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소방○ ○○○은 0000. 0. 0.부터 현재까지 ○○소방서 ○○○○○에서 근무  
하면서 0000. 00. 00.(금), 0000. 00. 00.(목)에 임신검진을 사유로 임신검진휴가  
를 사용하였으나, ○○소방서 감사기간 동안 진료사실증명원 및 통원확인서를  
확인한 바 임신검진 사실이 없음에도 임신검진휴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고,

소방○ ○○○는 ○○. ○. ○.부터 현재까지 ○○소방서 ○○○○○에서 근  
무하면서 0000. 0. 0.(월)에 임신검진을 사유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하였으나,

5) 임신검진 : 임신확인 후 28주(7개월)까지 4주 1회, 29주 ~ 36주(9개월) 2주 1회, 37주 이후 주 1회 등

○○소방서 감사기간 동안 진료사실증명원 및 통원확인서를 확인한 바 임신검진 사실이 없음에도 임신검진휴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으며,

○○소방서 소방○ ○○○은 ○○. ○. ○.부터 ○○. ○. ○○.까지 ○○소방서에 근무하면서 0000. 0. 00.(토) 당번근무(09:00부터 익일 09:00까지)일 주간 연가(09:00~19:40)를 상신 하면서 근무상황 종별을 ‘연가’로 선택하여 연간 연가 일수에서 공제되도록 하여야 했으나, ‘기타’로 입력하여 연가일수 공제 없이 연가 1일을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

위 ○○○-○○○-○○○의 행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고”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 5. 조치할 사항

### 가. ○○소방서장은

[징계] 위 관련자 소방○ ○○○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위 관련자 소방○ ○○○, 소방○ ○○○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회수)] 규정과 다르게 공가나 특가를 사용하고, 부당하게 휴가를 신청하여 과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1,494,38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나. ○○소방서장은

[경고] 위 관련자 소방○ ○○○을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강 원 도

## 시정

제 목 특정업무경비, 급량비 등 지출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내 용

### 1. 개요

○○소방서(○○○○○)에서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복무관리와 급여 및 수당, 등의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2. 지적사항

#### 가. 특정업무경비 지출 부적정

#####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307호, 시행 2023. 9. 26.] 제4조 제2호 업무추진비의 기본경비 [별표 2] 6호6)에 따르면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를 월정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급대상은

6) 특정업무경비

(단위: 원)

| 구 분            | 대 상  | 월 액     |
|----------------|--|---------|
| 공통<br>필수<br>항목 | 구조구급활동비<br>▶119안전센터 구급요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요원 및 소방서의 구조<br>구급업무담당공무원          | 100,000 |
|                | 방 호 활 동 비<br>▶소방령이하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하는 자<br>- 소방정승선요원, 소방항공대요원, 기능직(소방차운전원) 포함 | 170,000 |

지급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제266호, 시행 2023. 1. 1.] 제13조 제1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5-2. 특정업무경비(204-03)’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업무에 퇴직, 직책 신설 또는 해외연수, 교육, 파견, 병가, 휴직 등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발령(명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소속 직원의 급여 등을 지급할 때에는 직원들의 복무관리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휴직, 장기교육, 병가 등으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는 특정업무경비가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했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 대상 기간(2020. 6. ~ 현재까지) 동안 교육입교, 병가 등으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직원 16명에게 방호활동비 874,380원, 구조구급활동비 554,810원을 초과 지급하였고, 직원 2명에게는 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호활동비 175,480원, 구조구급활동비 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나. 급량비 지급 부적정

#####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회계법」[법률 제17893호, 시행 2022. 1. 13.]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307호, 시행 2023. 9. 26.] 제6조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고, 「같은 규정」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편성목·통계목)’에 따라 세부분류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중 매식비는 200 물건비 - 201 일반운영비 - 01. 사무관리비 중 5. 급량비에 포함되어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급식제공 경비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제266호, 시행 2023. 1. 1.]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2-1. 사무관리비(201-01)’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3639호, 시행 2023. 10. 19.]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고, 급식제공 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에는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접속기록, 문서 생산내역 등)을 확인 후 집행해야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33312호, 시행 2023. 3. 2.]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매식비를 지급할 경우 급식제공 대상자가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확인 가능한 객관적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접속기록, 문서 생산내역 등)을 확인 후 집행하여야 하고, 식비를 정액으로 지급받은 근무지 외 국내출장자가 출장종료 후 복귀하여 시간외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출장여비의 식비와 매식비를 중복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 대상 기간(2020. 6. ~ 감사일 현재까지) 동안 ○○소방서로부터 급량비 지급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7명(중복 2명 포함)에게 관외출장에 따른 식비 20,000원이 포함된 출장여비를 지급하였음에도 같은 날 야근 매식비를 중복 지급하였다.

##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가. 관련자 의견: 관련자 의견 없음

나. 관련자 의견에 대한 판단: 판단이 필요하지 않음

4.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처분대상 없음

## 5.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시정(회수, 추급)] 휴가, 장기교육 등으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초과 지급된 특정업무경비 1,429,190원 및 관외출장여비와 중복 지급된 급량비 51,500원을 회수하시고, 미지급된 특정업무경비 275,480원을 추급하시기 바라며, 복무 등 관련 부서에서는 휴가, 장기교육 등으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않은 직원 현황이 누락되지 않도록 회계 부서로 통보해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강 원 도

## 시정

제 목 의용소방대 수당 중복 지급 등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내 용

### 1. 개요

○○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76호, 시행 2021. 6. 9.]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 업무에 대해 체계적으로 보조를 받기 위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 2. 지적사항

#### 가.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시간 미달자 관리 소홀

#####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61호, 시행 2022. 12. 1.] 제6조, 제18조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의용소방대원으로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대원에게는 기본교육<sup>8)</sup>으로 36시간을, 기본교육을 이수한 대원에게는 연간 12시간의

7) 의용소방대 제도, 화재진압장비 사용방법, 위험물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기본 자질 함양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교육<sup>9)</sup>을, 기본교육을 이수한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훈련<sup>9)</sup>을 연간 24시간을 각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표2]와 같이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2년 내에 기본교육을 18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전문교육은 연간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간 12시간 이상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해당 대원을 해임하도록 되어 있다.

#### [표2]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이수 최소시간

□ 개별 이수교육 시간의 50%이상 이수하지 못할 경우 해임사유에 해당

- 신규대원: 임명된 후 2년 이내 기본교육 36시간 → 기간 내 18시간 미만일 경우 해임사유
- 기본교육 이수 대원(전담대 제외): 전문교육 연 12시간 → 연간 6시간 미만일 경우 해임사유
- 기본교육 이수 전담의용소방대원: 월 2시간 이상(연 24시간) → 연간 12시간 미만일 경우 해임사유

자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구성

따라서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해임기준이 되는 교육이수 최소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해임사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의용소방대원에게 교육이수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하고,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했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 중 의용소방대원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교육훈련 실적을 확인한 결과 의용소방대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이수시간이 해임기준(기본교육 18시간, 전문교육 6시간)에 해당하는 11명 중 2명에 대하여 해임하였으나, 9명은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에 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8) 수난구조, 산악구조, 소방자동차의 구조 및 점검,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전문교육을 갈음하여 매월 2시간 이상을 실시하여 연간 24시간의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 교육훈련을 실시

그 결과 의용소방대원 중 일부가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한 기본교육 및 전문성을 강화할 소정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 진압, 구조·구급 현장에 참여하고 있어 의용소방대원의 보조 활동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

## 나.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여비 및 소집수당 지급 부적정

###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76호, 시행 2021. 6. 9.]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61호, 시행 2022. 12. 1.] 제18조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매월 2시간 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112호, 시행 2023. 8. 4.] 제21조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교육훈련에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업무 등 제7조10)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장으로부터 교육훈련기록부를 제출받아 교육

훈련 여비의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고, 소방활동 보조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방활동기록부를 제출받아 의용소방대 활동시간을 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했어야 했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 중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여비 및 소집수당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의용소방대 ○○○, ○○○의 경우 0000년 0월 0일 정기 교육시간(14:00~16:00)과 실종자 수색활동(11:42~15:30)이 중복되는 등 총 32건 173명의 지급 신청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하고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및 교육훈련 여비를 중복하여 지급하는 등 의용소방대 수당 및 여비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가. 관련자 의견: 관련자 의견 없음

나. 관련자 의견에 대한 판단: 판단이 필요하지 않음

4.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처분대상 없음

## 5.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시정(회수)] ①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시간 기준미달 등으로 해임처분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교육 실적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의용소방대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된 교육여비 및 소집수당 2,904,50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10)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강 원 도

## 경고·시정

제 목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및 조사부 작성 소홀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①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 ○○○

② ○○소방서 ○○○○○○○○○ 소방○ ○○○

③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 ○○○

④ ○○소방서 ○○○○○○○○○ 소방○ ○○○

내 용

### 1. 개요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강원특별자치도규칙 제3275호, 시행 2023. 6. 11.] 제37조 제3항에 따라 총 411개소의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2. 지적사항

가. 고장 소방용수시설 후속 조치 미흡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소방기본법」[법률 제19026호, 시행 2023. 5. 16.] 제10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급수탑·저수조(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98호, 시행 2023. 5. 16.] 제7조,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304호, 시행 2023. 1. 30.] 제12조, 제13조,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소방청훈령 제274호, 시행 2023. 1. 1.] 제22조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은 즉시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고장 등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통보하는 등 사후조치를 하여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에서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소방용수시설의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담당부서에 고장발생보고를 통해 수리요구를 하여야 하고, 담당부서에서는 대체 소방용수를 지정하여 고장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관할 상하수도사업소에 수리요구를 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즉시 수리하여 항상 가용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 중 고장발생 소방용수시설 후속 조치 현황을 확인한 결과 ○○○○○호는 소방용수조사부에 고장 내용을 작성하였으나, 고장발생보고를 누락하였고, ○○○○○호는 소화전 개방 시 수압불량으로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나 대체소화전 지정을 하지 않았으며, ○○○○○호 등 11개소는 대체소화전을 지정하고도 대응총괄과와 현장대응단만 수신처를 지정하는 등 전 직원 전파를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고장발생으로 수리 요청한 소방용수시설의 소방용수조사부를 확인한 결과 ○○○○○호의 경우 0000. 0. 00.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중 소화전 스펀들 교체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여 고장발생 보고가 이루어졌으나, 0000년 0월, 0000년 0월, 0월, 0월 소방용수조사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소방용수 정기조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나.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부적정

###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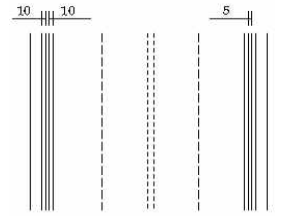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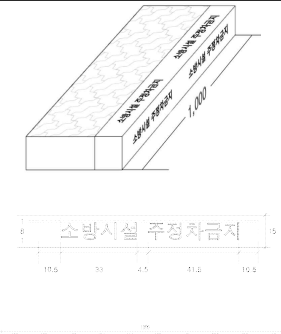
「소방기본법」[법률 제19026호, 시행 2023. 5. 16.] 제10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98호, 시행 2023. 5. 16.] 제6조, 제7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급수탑(給水塔)·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법률 제19158호, 시행 2023. 7. 4.] 제32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415호, 시행 2023. 7. 4.] 제8조에 따라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있으며,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설치하는 노면표시는 아래 [표4]와 같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표4] 소방용수시설 주변 노면표시

| 일련번호 | 종류 | 만드는 방식 (단위 : 센티미터) | 표시하는 뜻 | 설치기준 및 장소 |
|------|----|--------------------|--------|-----------|
|------|----|--------------------|--------|-----------|

| 일련<br>번호  | 종류                                 | 만드는 방식 (단위 : 센티미터)  | 표시하는 뜻   | 설치기준 및 장소  |
|-----------|------------------------------------|---|--|--|
| 516의<br>3 | 소방시설<br>주변<br>정·주차<br>금지표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제32조제6호 및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정차 및 주차 금지를 표시하는 것</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안전표지의 설치를 요청하는 소방 관련 시설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의 도로구간 길가장자리에 설치</li> <li>•길가장자리구역에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를 한 경우에는 길가장자리구역선 표시를 생략</li> <li>•연석이 없는 도로구간 등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연석)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설치</li> </ul>     |
| 516의<br>4 | 소방시설<br>주변<br>정·주차<br>금지표시<br>(연석)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제32조제6호 및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정차 및 주차 금지를 표시하는 것</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안전표지의 설치를 요청하는 소방 관련 시설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의 도로구간 연석에 설치</li> <li>•연석의 바탕은 적색으로 하고, 연석의 윗면 및 측면에 백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문구를 표기</li> <li>•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연석)를 설치한 경우,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는 생략 가능</li> </ul> |

자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제구성

그리고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304호, 시행 2023. 1. 30.] 제12조, 제13조 및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소방청훈령 제274호, 시행 2023. 1. 1.] 제2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조사를 하여야 하고, 소방용수시설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고장 등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는 소방용수시설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항시 소방용수시설의 위치·장소·관리실태 및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하고, 시·군 관련부서와 정기적으로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의 개최를 통하여

소방용수시설의 보강, 관리전환, 표지설치 등 상호 업무협조 사항을 교류하여야 하며, 소방용수시설의 법령 및 설치기준 개정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즉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했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 중 소방용수시설(지상식소화전 333개소, 승하강식 소화전 36개소, 비상소화장치 38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소방용수시설 인근 5미터 이내에 부적절하게 주차구획선이 설치되었음에도 양호로 결과를 보고하는 등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가. 관련자 의견: 관련자 의견 없음

나. 관련자 의견에 대한 판단: 판단이 필요하지 않음.

## 4.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서 ○○○○○ 소방○ ○○○은 0000. 0. 00.부터 0000. 0. 0.까지(6월) ○○소방서 ○○○○○○○○○에서 “○○○○○호” 소화전 담당자로 지정되어 관리하던 중 0000. 0. 00.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중 소화전 스피들 개폐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여 고장발생보고가 이루어졌으나, 0000년 0월 소방용수조사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소방용수 정기조사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소방서 ○○○○○○○○○ 소방○ ○○○는 0000. 0. 0.부터 0000. 0. 00.까지(2월) “○○○○○호” 소화전 담당자로 지정되어 관리하던 중 0000년 0월, 0월 소방용수조사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소방용수 정기조사업무를 소홀히 하였으

며,

○○소방서 ○○○○○○○○○○ 소방○ ○○○은 0000. 0. 00.부터 0000. 0. 0.까지(4월) ○○소방서 ○○○○○○○○○○에서 “○○○○○호” 소화전 담당자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일 0000. 0. 00.은 0000. 0. 00.부터 0000. 0. 0.까지 연가로, 0000. 0. 00.은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 배우자 출산에 따른 출산휴가로, 0000. 0. 00.은 소방용수관리시스템 오류로 업무대행자인 소방○ ○○○이 소방용수조사부를 작성하였으나, 0000년 0월은 소방용수조사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소방용수 정기조사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소방서 ○○○○○○○○○○ 소방○ ○○○은 0000. 0. 00.부터 감사일 현재까지(4월) “○○○○○호” 소화전 담당자로 지정되어 관리하던 중 0000년 0월 소방용수조사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소방용수 정기조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소방기본법」 제10조 등을 위반한 사항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소방)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고”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 5.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경고]** 위 관련자 소방○ ○○○, 소방○ ○○○, 소방○ ○○○, 소방○ ○○○을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소방용수시설 인근 5미터 이내에 설치된 주차구획선을 ○○○ 관계부서와 협의하시어 정비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 주의

제 목 과태료 금액 임의감경 등 처분 부적정

기관명 ○○소방서

관계부서 ○○○○○

관련자 ① ○○소방서 ○○○○○○○○○○(前 ○○○○○) 소방○ ○○○  
② ○○소방서 ○○○○○(前 ○○○○○) 소방○ ○○○  
③ ○○소방서 ○○○○○(前 ○○○○○) 소방○ ○○○

내용

### 1. 개요

○○소방서(○○○○○○)에서는 소방관계법령(소방공사업법, 소방시설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며, 감사대상 기간(2020. 6.~현재) 동안 과태료 44건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 2. 지적사항

#### 가.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과태료 감경 처리 부적정

#####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조, 제5조에 따라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할 기회를 준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로 감경하여 자진 납부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사전통지 기간 중 미성년자 등<sup>11)</sup> 또는 개별법령상<sup>12)</sup> 과태료 감경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의견 제출하는 경우, 행정청은 감경 사유를 판단하여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로 감경과 자진납부 감경을 중복<sup>13)</sup>하여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할 기회를 주면서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로 감경하여 자진 납부될 수 있도록 통지하고, 당사자에게 미성년자 등 또는 개별법령상의 과태료 감경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의견을 제출받아 감경여부와 자진납부 감경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했어야 했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20. 6.~현재) 동안 당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금액 감경 대상자(시행령 제2조의2 참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12)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감경기준)  
1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106쪽, 법제처 2022 발간)

④ 과태료 감경 제도 (5) 자진납부 감경을 하는 경우 개별법 상의 과태료 감경사유와의 관계  
행정청이 개별 과태료 법령상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사유를 존부를 확인하여 개별법 상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감경된 금액을 사전통지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 감경도 중복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청이 개별 법령상 과태료 감경사유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면, 당사자가 의견 제출을 통해 개별 법령상 과태료 감경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또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개별 법령상 감경과 자진납부 감경의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사자에게 과태료 감경 사유의 입증에 관한 의견 제출을 받기 전에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를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로 감경과 자진납부 감경을 중복하여 부과 및 징수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나.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과태료 처분 당사자 부적정

###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sup>14)</sup>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하며,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 관계인이 점검결과를 7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 등으로 방치한 관계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했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14)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20. 6.~현재) 동안 확인한 결과 ○○○○○○○○○○ 외 3개 대상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과태료 부과해야 함에도 관계인이 아닌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제3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하여 과태료 처분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가. 관련자 의견 : ○○소방서 ○○○○○○○○○○ 소방○ ○○○ 의견 제출

0000. 0. 00. ○○○○○주유소 과태료 감경기준은 본인의 임의적인 판단이 아닌 불입 파일에 의거하여 3, 5번 항목을 적용하였고, 과태료 감경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감경기준 안내문 첨부]

## 과태료의 감경기준 안내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1.가.》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 받으실 수 있으니 과태료 납부 전 의견제출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의 경우에는 감경이 제외됩니다.**

-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소방서 ○○○○○(☎ 0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관련자 의견에 대한 판단

○○소방서 ○○○○○○○○○ 소방○ ○○○은 0000. 0. 0.부터 0000. 0. 0.까지 ○○소방서 ○○○○○에서 위험물 민원업무를 담당하면서 0000. 0. 00.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상치장소 위반) 3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별표9] 1. 3)15) 및 5)16)에 따라 감경 처리하였을뿐 임의적으로 감경처리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감사 대상 기간 중 과태료 처분 관련 서류17) 등 검토 한 바, 소방○ ○○○은 과태료 부과 처분 당사자에게 사전 또는 의견제출 기간 중에 관련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받거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소방○ ○○○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4.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15)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17) ○○소방서 ○○○○○-○○○○호(○○○○.○.○○.)「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 발부 의뢰 계획(○○○○○, ○○○○○○○○)」  
 ○○소방서 ○○○○○-○○○○호(○○○○.○.○○.)「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 발부 의뢰 계획(○○○○○, ○○○○○○○○)」  
 ○○소방서 ○○○○○-○○○○호(○○○○.○.○○.)「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 발부 의뢰 계획(○○○○○, ○○○○○○○○)」

○○소방서 ○○○○○ 소방○ ○○○은 0000. 0. 00.부터 0000. 0. 0.까지 ○○소방서 ○○○○○에서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 등 2개 소의 소방시설법 위반(자체점검 결과 지연보고)에 대하여 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소방서 ○○○○○ 소방○ ○○○은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 ○○소방서 ○○○○○에서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 ○○○○○ 건축물의 소방시설법 위반(자체점검 결과 지연보고)에 대하여 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또한 ○○○○○○ 건축물의 소방시설법 위반(소방안전 관리자 선임신고 지연)에 대하여 임의 감경 처리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소방서 ○○○○○○○○○ 소방○ ○○○은 0000. 00. 0.부터 0000. 0. 0.까지 ○○소방서 ○○○○○에서 건축 및 위험물 민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자위승계 지연신고)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착공변경신고 위반)에 대하여 임의 감경 처리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주의”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 5. 조치할 사항

가. ○○소방서장은

[주의] 위 관련자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서장은

[주의] 위 관련자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다. ○○소방서장은

[주의] 위 관련자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 경고·주의·시정

제 목 제조소등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정기점검 업무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       |                                  |         |
|-------|----------------------------------|---------|
| 관 련 자 | ① ○○소방서 ○○○○○○○○○○(前 ○○○○○○○○○○) | 소방○ ○○○ |
|       | ② ○○소방서 ○○○○○○○○○○               | 소방○ ○○○ |
|       | ③ ○○소방서 ○○○○○○○○○○(前 ○○○○○○○○○○) | 소방○ ○○○ |
|       | ④ ○○소방서 ○○○○○○○○○○(前 ○○○○○○○○○○) | 소방○ ○○○ |
|       | ⑤ ○○소방서 ○○○○○○○○○○               | 소방○ ○○○ |
|       | ⑥ ○○소방서 ○○○○○○○○○○(前 ○○○○○○○○○○) | 소방○ ○○○ |
|       | ⑦ ○○○○○ ○○○○○(前 ○○○○○○○○○○)      | 소방○ ○○○ |
|       | ⑧ ○○소방서 ○○○○○○○○○○               | 소방○ ○○○ |
|       | ⑨ ○○소방서 ○○○○○○○○○○(前 ○○○○○○○○○○) | 소방○ ○○○ |

내 용

### 1. 개요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는 총 519개소의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정기점검 등에 관한 지도·감독업무를 하고 있다.

### 2. 지적사항

## 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태만 과태료 부과 누락

###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및 제39조에 따르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위험물취급자격자<sup>18)</sup>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시 이전 안전관리자의 해임(퇴직)한 날을 확인하여 30일 이내에 재선임 및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 하였어야 했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 중 ○○소방서에서 제출한 위험물 안전관리자 현황을 확인한 결과 ○○○○○○ ○○○○ 지하탱크저장소 위험물안전관리자

1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별표5]

|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
|--|---------------|
| 1.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모든 위험물        |
| 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
| 3. 소방공무원 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

선임신고를 13일이 경과하여 신고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처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시 자격 미달자 수리

###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는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접수 시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선임신고서를 수리하였어야 했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 중 ○○소방서에서 제출한 위험물 안전관리자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일반취급소, 지하탱크저장소 및 옥외탱크저장소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접수 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수리 한 사실이 있다.

## 다.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sup>19)</sup>,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

19)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  | 안전관리자의 자격  |
|---------------|--|--|
| 저장소           | 1. 옥내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br>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               | 2. 옥외탱크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br>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               | 3. 옥내탱크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br>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                                |
|               | 4. 지하탱크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br>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250배 이하의 것 |
|               | 5. 간이탱크저장소로서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  |
|               | 6. 옥외저장소 중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   |  |
|               | 7.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   |  |
|               | 8. 선박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또는 항공기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의 250배(제1석유류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0배)이하의 것   |  |
|               | 9.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장소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
| 취급소           | 1. 주유취급소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               | 2. 판매취급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br>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것                     |
|               | 3. 제4류 위험물 중 제1류 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br>가.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br>나.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것 |  |
|               | 4.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것   |  |
|               | 5.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   |  |
|               | 6. 「놓여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
|               |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르면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당해 제조소 등의 정기점검을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운송자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 및 제39조에 따르면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제조소등의 현황 및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대상에 대하여서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였어야 했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 중 ○○소방서에서 제출한 2022년도 위험물 제조소 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대상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 등 2개소에 대해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입건 또는 과

가.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태로 부과 처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관련자 의견 없음

4.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서 ○○○○○○○○○ 소방○ ○○○은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 ○○소방서 ○○○○○○○○○에서 근무하면서 ○○○○○○○○○ 일반취급소 및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수리(0000. 00. 00.) 시 제1석유류를 지정수량 20배 이상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에 해당하여 선임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이상의 자격자인지 확인 후 처리하였어야 했음에도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를 신고 수리하는 등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고,

소방○ ○○○은 0000. 00. 00.부터 현재까지 ○○소방서 ○○○○○○○○○에서 근무하면서 ○○○○○○○○○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수리(0000. 0. 00.) 시 제1석유류를 지정수량 20배 이상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에 해당하여 선임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이상의 자격자인지 확인 후 처리하였어야 했음에도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를 신고 수리하는 등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으며,

○○소방서 ○○○○○○○○○ 소방○ ○○○은 0000. 00. 00.부터 0000. 0. 00.까지 ○○소방서 ○○○○○○○○○에서 근무하면서 ○○○○(주) 옥외탱크저장소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수리(0000. 0. 00.) 시 제3석유류를 지정수량 40배 이상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에 해당하여 선임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이상의 자격자인지 확인 후 처리하였어야 했음에도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를 신고 수리하는 등 위험물안전관리

자 선임신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고”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소방서 ○○○○○○○○○ 소방○ ○○○은 0000. 0. 0.부터 0000. 00. 00.까지 ○○소방서 ○○○○○○○○○ 팀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 일반취급소 및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검토(0000. 00. 00.) 시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른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로 적합하게 선임 신고되었는지 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소방○ ○○○은 0000. 0. 00.부터 현재까지 ○○소방서 ○○○○○○○○○ 팀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검토(0000. 0. 00.) 시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른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로 적합하게 선임 신고되었는지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며,

○○소방서 ○○○○○○○○○ 소방○ ○○○은 0000. 0. 0.부터 0000. 0. 0.까지 ○○소방서 ○○○○○○○○○ 팀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 옥외탱크저장소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검토(0000. 0. 00.) 시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른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로 적합하게 선임 신고되었는지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

신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주의"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 ○○○○○ 소방○ ○○○은 0000. 0. 0.부터 0000. 0. 00.까지 ○ ○소방서 ○○○○○○○○○ 센터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 일반취급소 및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검토(0000. 00. 00.) 시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른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로 적합하게 선임되었는지 지도 및 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소방○ ○○○은 0000. 0. 00.부터 현재까지 ○○소방서 ○○○○○○○○○ 센터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검토(0000. 0. 00.) 시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른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로 적합하게 선임되었는지 지도 및 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소방서 ○○○○○○○○○ 소방○ ○○○은 0000. 0. 0.부터 0000. 0. 00.까지 ○○소방서 ○○○○○○○○○ 센터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 옥외탱크저장소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검토(0000. 0. 00.) 시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른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로 적합하게 선임되었는지 지도 및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주의"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 5. 조치할 사항

가. ○○○○○○○○은

[주의] 위 관련자 소방○ ○○○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서장은

[경고] 위 관련자 소방○ ○○○을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위 관련자 소방○ ○○○,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다. ○○소방서장은

[주의] 위 관련자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라. ○○소방서장은

[경고] 위 관련자 소방○ ○○○을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마. ○○소방서장은

[경고] 위 관련자 소방○ ○○○을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위 관련자 소방○ ○○○,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 ○○○○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태만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시고, ② ○○○○○○○○○, ○○○○○○○○○, ○○○○(주)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자격 부적합)에 대한 처분(입건)을 하시고, 선임자격 기준에 적합한 안전관리자(2년 이상 위험물기능사 이상)로 재선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③ ○○○○○○ 및 ○○○○○○에 대해서는 제조소등 정기 점검 결과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시고, ④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